

# 감 사 보 고 서

본 감사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11조(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2010년 11월 6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의 협회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감사범위와 방법에 대한 제언

본 감사인은 먼저 감사 범위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 제언에 명기한 범위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조직으로서 여러 면에서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임을 감안하여 감사인이 감사범위를 제안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총회 이후 감사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범위가 확정되면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명문화된 감사 범위 내에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조직의 성격 상 전문적 회계감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기관운영감사와 간략한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관운영감사는 운영일반, 부서별 사업의 적정성이, 회계감사는 회계사항이 감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해서 감사 범위는 운영일반, 부서별 사업, 회계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감사인은 감사의 절차와 방법 역시 최소수준으로 간소화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인의 감사계획서 제출(감사 대상과 증빙서류 요청 명시) > 감사 증빙서류의 준비 > 서류 분석 > 감사보고서 작성 > 감사보고서 공표 정도로 향후의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 감사의 범위와 감사 실시의 목표

본 감사인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창립일인 2010년 11월 6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의 협회 운영과 회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창립 이전의 회계자료가 있었으나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본 감사인이 실시할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한 분석 자료는 회의록 전체,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 사업보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계보고”, 창립총회 이후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각 1장, 세부내역관련 엑셀 데이터였습니다. (추후 사업보고는 국별로 작성되어 결재를 득한 자료를 작성하기를 권하며, 지출결의서 역시 건별로 세분화하여 결재를 득하기를 권

합니다. 또 세부내역은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최소수준의 부기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분석 자료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협회장 및 임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위의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운영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과 회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 ◎ 감사의 기준과 감사 세부내용

본 감사인은 운영감사에서 감사인 개인의 지향이나 사업 아이템 구상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협회의 비전과 목표, 부서별 목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과 사업 실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배분상의 적정성과 개별 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운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 사업보고”는 협회의 운영과 사업을 모든 면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_\_\_ 부분이 운영감사 결론입니다) 특히 4개월 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비전과 목표에 접근해간 성과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1. 보고서 명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보고서”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는 전체 운영과 관련된 사안(회의 등의 의사결정구조, 조직과 인력편제, 사무실 등 하드웨어 운영), 기구별 사업 내용(기구별로 목표, 실행내용, 목표달성도, 특기사항)과 더불어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으로서 소통의 포괄성과 적절성, 지역조직의 활동 등에 관한 사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운영감사의 철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의록뿐만 아니라 사업 및 업무 수행계획과 수행을 위한 결재, 수행결과에 대한 정리평가 등의 기록이 적절한 수준에서 편집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소통을 토대로 한 구체적 사업계획과 계획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립이 요구됩니다.

회계감사 대상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계보고”, 창립총회 이후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각 1장, 세부내역관련 엑셀 데이터는 **내용적으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적이라 함은 형식의 면에서 보완의 필요가 있음을 뜻하나 감사 결과의 적정 평가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기해드립니다. 형식의 보완 필요성은 조직 운영 초기라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본 감사인의 의견 표명 내용을 필요한 수준에서 받아들여시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의 구체적 의견표명을 부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과 지출결의서의 형식, 작성 단위의 적정화, 세

부내역관련 엑셀데이터의 서식 적정화가 필요합니다. 2. 위의 내용을 “한국 기록전문가협회 회계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증거서류로 총자산변동표도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수입은 단순하므로 현행대로 문제가 없겠으나 지출은 부서별 예산에 근거하여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지출의 비목도 정부예산회계 제도의 일부를 준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 현재의 지출 현황을 볼 때 운영비 지출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전체 수입액, 협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 지출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회의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사용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속한 대학의 기준으로 보면 1회 1인 12,000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음주와 관련된 지출은 영수증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류를 위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수증은 처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의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은 불편함을 초래하기 충분하나 대부분의 조직이 이런 지침을 두고 지키려 하는 것은 적정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7. 여비 관련 지침 역시 필요하리라 봅니다. 현재 회계증빙을 보면 교통비만 잡혀 있어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교통비와 일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대부분이 조직이 정하고 있듯이 1개월 여비 한도액을 정해두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 ◎ 결론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위 감사 분석 자료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2010년 11월~2011년 2월까지의 운영, 회계의 합리적 처리 결과를 내용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부기한 감사인의 의견은 적정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강제적이지 않음을 명기합니다.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감사보고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권고합니다)

2011년 3월 12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감사 김익한 (직인색략)

# 감 사 보 고 서

본 감사 등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11조(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2010년 11월 6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의 회계 및 회계이외의 업무를 감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로부터 2010. 7. 28 ~ 2011. 3. 9일까지의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운영 및 일반회계에 관한 서류 일체를 사무국으로부터 제출받아 2011. 3. 10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세입·세출 및 지출결의서는 적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1년 3월 12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감사 권순명 (인)

